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마 포 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수 신 : 마포구청장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08년 5월 2일 ~ 5월 30일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정해원(마포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김상염(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김두수(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이택용(세무사)

· 검 사 위 원 : 김태원(세무사)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2008년 6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선임받아 2008년 5월 2일부터 2008년 5월 30일(20일간)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재산 및 기금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마포구의회의원 정 해

위 원 공인회계사 김 상 엽

위 원 공인회계사 김 두 수

위 원 세 무 사 이 택 용

위 원 세 무 사 김 태 원

【 목 차 】

Ⅰ. 결산검사 결과 총평 3

Ⅱ.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3

1. 일 반 회 계 3
(1) 세 입 3
(2) 세 출 5

2. 특 별 회 계 11
(1) 의료보호기금 11
(2) 주 차 장 12
(3) 기반시설부담금 14

Ⅲ.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서 15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7
2. 일반회계 결산 19
3. 특별회계 결산 19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21
5.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22
6. 기금 결산 22
7. 채권 및 채무의 결산 23

Ⅰ. 결산검사 결과 총평

마포구 의회로부터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여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여 마포구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2007회계연도 마포구의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자료 등 결산관계 서류를 토대로 검사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Ⅱ.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와 「Ⅲ.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당해연도('07)		261,259	313,600	283,483	1,413	28,704
전 년 도('06)		234,466	269,763	242,386	879	26,498
증 감	금 액	26,793	43,837	41,097	534	2,206
	비 율	11%	16%	17%	61%	8%

① 세입결산 개요

○ 예산현액 261,259백만원 대비 수납액은 283,483백만원으로 22,22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지방세수입에서 1,859백만원 증가
- 세외수입에서 21,334백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에서 969백만원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90.4%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음.

○ 결손처분액은 1,413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효완성과 무재산등에 의해 발생된 것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2%인 28,704백만원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질적인 체납과 납세능력부족 등에 기인한 것임.

○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세입액과 부합되었음.

②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

가. 과징계획의 현실성 제고 노력

○ 세입부서에서는 각종 세입의 징수를 위해 세목별 과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단순히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목표치나 현실적인 징수율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100%의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만큼 전년대비 목표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징수율을 과징계획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나. 체납액 징수노력 부족 (특별회계 공통사항)

○ 세입금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처분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징수절차가 규정되고 있으므로, 부과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해야 하고,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등의 조치를 취해 채권을 실현해야 함에도, 독촉 절차 누락, 재산조사 소홀, 무재산·행방불명자의 체납정리 방치등 체납액 징수절차에 있어 문제점이 다소 발견됨.

○ 결손처분 처리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시효결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체납액의 징수 방치, 재산이 압류된 체납액에 대한 시효결손, 재산조사 소홀로 인해 재산이 존재하는 데도 시효결손한 사례등이 발견됨.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것은 공부를 정리할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지 체납

액의 정리수단이 아님. 따라서 징수권의 소멸, 즉 소멸시효 완성은 엄격히 적용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과태료, 과징금, 강제금 등은 재정목적의 세입이 아니므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부득이 부과되었을 경우 철저하고 신속히 징수하여 불공정한 징수 사례가 없도록 하여 성실납부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과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세입의 부과와 징수업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 신규직원에게 분담시키지 말고 경력있고 유능한 직원이 맡아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감사부서에서는 세입부서에 대하여 시효결손 결의된 사항중 부적절한 처분이 있는 지를 재검검하여 적의 조치하기 바람.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이·전용	이 체
당해연도('07)		252,922	8,337	456	2,123	127,426
전 년 도('06)		213,142	21,324	2,182	412	0
증 감	금 액	39,780	△12,987	△1,726	1,711	127,426
	비 율	19%	∧61%	△79%	415%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당해연도('07)		261,259	231,569	13,883	15,807
전 년 도('06)		234,466	208,827	8,338	17,301
증 감	금 액	26,793	22,742	5,545	△1,494
	비 율	11%	11%	66%	△9%

① 세출결산 개요

○ 2007회계연도 예산액은 252,922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금 8,33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1,259백만원이고, 예비비는 456백만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872백만원임.

○ 예산 이·전용은 2,123백만원으로, 이용 407백만원은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족분이며, 전용 465백만원은 민원안내도우미 폐지에 따른 무인안내시스템 도입등 32건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1,251백만원은 세목변경(예산재배정)임.

○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88.6%에 해당하는 231,569백만원이고, 명시이월은 기구정원 조직진단용역 등 8건에 4,938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서강동 복합청사 건립 등 22건에 8,945백만원이 공사기간 부족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에 해당되는 15,807백만원이었으며, 주요사유는 집행잔액이 12,497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87백만원, 계획변경취소 160백만원 등이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구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출액과 부합되었음.

②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

가. 전기안전관리 매뉴얼 및 비상대책 관리 절차 보완

○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청 건물 등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청풍전기안전관리㈜에게 위탁(연간 3,119,280원)하여 점검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2007회계연도중 몇 번의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컴퓨터를 포함한 전기제품 등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하였음. 구청, 한국전력, 전기안전대행업체간 책임소재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청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전기안전사고는 예측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하므로 비상시 대책관리 매뉴얼 및 대응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신청사 이전후 전기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여 별도 전담부서 및 인원을 확보하여 철저

나. 공무상 사용하는 유류대 정산 및 사후관리절차 보완

○ 구청은 SK네트웍스의 성산대교 주유소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ℓ과 40ℓ의 쿠폰을 1,000ℓ단위로 구매하여 공무상 소요되는 차량의 유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차량의 운행일지(운행거리, 사용유류량 기록등)와 비교하여 구입한 유류쿠폰을 제공하고 수령한 자의 서명을 받고 있음. 구입한 쿠폰이 사적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에도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부분

○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보관, 보고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시정사항을 보완 조치하고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용직에 대하여 분기단위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다만, 모든 일용직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일용직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2007회계연도 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일용직의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이행신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일상경비 집행 실태

○ 재무과에서는 일년에 2회씩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와 2007년 3/4분기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이 지급결의 날짜 미기재, 회계서류 금액 수기 기재 및 정정, 접대성 경비 집행품의서에 집행대상 미기재, 세금계산서 미징구등 예산집행의 기본적 절차에 해당하

는 것이며 일부부서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에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검사결과가 충분히 이행되고 보완되는 등의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짐. 검사결과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실시하여 회계부서의 일상경비 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 일상경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중 이자수입의 환수 미흡

○ 구청에서 지급하는 외부 사업수행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혹은 위탁사업비(이하 "사업비등"이라 함)는 해당 기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집행하다가 회계연도 종료시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구청에서 잡수입으로 환수하고 있음. 구청에서 실제 회수하는 이자수입은 해당 예금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이자금액은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법인세 14%가 차감된 금액이며, 동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정기법인세 신고시에 납부금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되고 있음. 따라서 원천징수 금액만큼의 이자수입이 구청에 환수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귀속되거나, 국고에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나, 전체 구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자수입에 대한 잡수입 처리가 미흡한 상황임.

바. 민간위탁금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려

○ 외부 사업수행기관 등이 구청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됨. 외부 사업수행기관 등은 동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업비 지출금액으로 정산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짐. 이에 대해 구청에서 해당 사업기관이 동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업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사업비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반납되어야 할 금액인지, 아니면 면세나 비영리법인이어서 부차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원가항목인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부분도 이자수입과 동일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사업비 정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증빙 누락

○ 노인복지/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지출된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의 경우 2007년중 159,600,000원이 교부되고 101,850원이 집행잔액으로 회수되었음. 상기 사업관련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최초 협약서 및 위탁과 보조비 등 사업비 관리규정과 달리 정산서뒤에 첨부되어야 할 관련증빙 사본철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함.

아. 재산조성비에 대한 사후관리

○ 여성정책/보조사업/민간위탁금 세목으로 지출된 (사)홀트아동복지회에서 수행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의 경우 협약서에 따르면 관련 사업비 지출항목중 '재산조성비'라는 과목이 있으며, 동 과목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비품의 취득금액을 계상하며 관련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산조성비로 분류된 집기비품 등은 구청으로 반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산조성비로 분류되어야 할 항목이 일반운영비 등 타 항목으로 분류되었는 지에 대한 검토 및 재산조성비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 실사 및 반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 공사관련 감리업무 명문화 필요

○ 해당 건축관련 법규에 의하면 100억이상 공사의 경우 반드시 책임감리를 받도록 규정화되어 있으며, 100억이하 공사는 발주처의 선택사항으로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선정하여 감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음. 또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해 총사업비 30억기준으로 사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등을 심의 및 결정하고 있고, 공사의 성격, 중요성,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리 또는 일반감리 등을 선택하여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고 있으나, 감리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임의적인 선택이 가능한 상황임. 현재 운영중인 투심위 규정에 총사업비 기준에 따른 감리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과 및 사업부서에서 공사계약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장하며, 공사의 성격상 대부분의 기성된 공사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책임감리를 진행하여 공사의 하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차. 마약류 물품의 재고 실사 및 보고절차 보완

○ 마약류 물품에 대한 재고실사 및 보고절차를 점검한 결과, 관리 및 점검부분에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전예방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보고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카. 구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의 독립성에 따른 편성과 집행관리

○ 구의회사무국은 구청과 별도로 경리관과 지출원을 두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 및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특별회계

(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①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07)	297	462	307		155
전 년 도('06)	184	306	185		121

○ 세입결산개요 및 결산검사 의견

- 수납액 307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66.4%로 전년도보다 6% 정도 개선되었음.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음.

②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당해연도('07)	297	214	83	
전 년 도('06)	184	160	24	

○ 세출결산개요 및 결산검사 의견

- 예산현액은 29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72%인 214백만원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83백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임.

②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해연도('07)	23,056	8,135	14,808	113
전 년 도('06)	26,482	12,351	14,060	71

○ 세출결산개요 및 결산검사 의견

- 예산현액 26,482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46.6%인 12,35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3.1%인 14,060백만원임.
-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나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부 제도46011-10535호(2001.04.11) 질의회신〕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관련예규(소득 22601-3207호, 1985.11.04)를 참조하여 회사의 포상계획·각종 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3)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①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해연도('07)	788	2,936	1,566		1,370
전 년 도('06)					

○ 세입결산개요 및 결산검사 의견

- 수납액 1,566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53.3%로 나타남.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음.

②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당해연도('07)	788	0	788	
전 년 도('06)				

○ 세출결산개요 및 결산검사 의견

- 예산현액 78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음.

Ⅲ.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서

Ⅲ.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서

1. 세입 · 세출 결산총괄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예산현액 285,401,942,307원에 대하여

- 수납액은 310,143,713,392원이며
- 지출액은 239,918,298,213원임

○ 그 차인잔액은 70,225,415,179원으로서, 구 금고가 제출한 세출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함.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집행잔액
합 계	285,401,942,307	310,143,713,392	239,918,298,213	70,225,415,179
일반회계	261,259,708,547	283,483,348,217	231,569,030,771	51,914,317,446
특별회계	24,142,233,760	26,660,365,175	8,349,267,442	18,311,097,733
의료보호기금	297,803,000	307,891,040	214,625,260	93,265,780
주 차 장	23,056,430,760	24,785,918,438	8,134,642,182	16,651,276,256
기반시설부담금	788,000,000	1,566,555,697	0	1,566,555,697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세 입

2007회계연도의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결손처분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합 계	285,401,942,307	364,814,743,657	310,143,713,392	1,413,096,110	53,257,934,155
일반회계	261,259,708,547	313,600,183,687	283,483,348,217	1,413,096,110	28,703,739,360
특별회계	24,142,233,760	51,214,559,970	26,660,365,175	0	24,554,194,795
의료보호기금	297,803,000	462,733,150	307,891,040	0	154,842,110
주 차 장	23,056,430,760	47,815,245,067	24,785,918,438	0	23,029,326,629
기반시설부담금	788,000,000	2,936,581,753	1,566,555,697	0	1,370,026,056

(2) 세　　출

2007회계연도의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이·전용	이　체
합　계	276,993,474,000	8,408,468,307	456,888,000 ^456,888,000	2,131,675,000 ^2,131,675,000	150,131,438,000 ^150,131,438,000
일반회계	252,921,924,000	8,337,784,547	456,888,000 △456,888,000	2,123,484,000 △2,123,484,000	127,425,526,000 △127,425,526,000
특별회계	24,071,550,000	70,683,760	0	8,191,000 △8,191,000	22,705,912,000 △22,705,912,000
의료보호기금	297,803,000	0	0	0	535,999,000 △535,999,000
주 차 장	22,985,747,000	70,683,760	0	8,191,000 △8,191,000	22,169,913,000 △22,169,913,000
기발시설부담금	788,000,000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85,401,942,307	240,849,300,062	239,918,298,213	13,997,154,080	31,486,490,014
일반회계	261,259,708,547	240,386,460,000	231,569,030,771	13,883,581,460	15,807,096,316
특별회계	24,142,233,760	8,462,840,062	8,349,267,442	113,572,620	15,679,393,698
의료보호기금	297,803,000	214,625,260	214,625,260	0	83,177,740
주차장	23,056,430,760	8,248,214,802	8,134,642,182	113,572,620	14,808,215,958
기반시설부담금	788,000,000	0	0	0	788,000,000

(3)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70,225,415,179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938,075,000원
- 사고이월 9,059,079,080원
- 보조금 사용잔액 1,282,906,55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945,354,544원임.

2. 일반회계 결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결산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예산현액 261,259,708,547원
(전년도 이월금 8,337,784,547원 포함)에 대하여
- 수납액은 283,483,348,217원이며,
- 지출액은 231,569,030,771원임

○ 그 차인잔액은 51,914,317,446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 4,938,075,000원
- 사고이월 8,945,506,460원
- 보조금 사용잔액 1,177,049,6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853,686,371원임.

3. 특별회계 결산

(1) 총괄결산 상황은

○ 예산현액 24,142,233,760원
(전년도 이월금 70,683,760원 포함)에 대하여
- 수납액은 26,660,365,175원이며,
- 지출액은 8,349,267,442원임.

○ 그 차인잔액은 18,311,097,73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고이월 113,572,62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5,856,9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91,668,173원임.

(2)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

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예산현액 297,803,000원에 대하여

- 수납액은 307,891,040원이며,
- 지출액은 214,625,260원임

○ 그 차인잔액은 93,265,78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집행잔액 80,791,2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74,540원임.

2)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현액 23,056,430,760원
(전년도 이월액 70,683,760원 포함)에 대하여

- 수납액은 24,785,918,438원이며,
- 지출액은 8,134,642,182원임

○ 그 차인잔액은 16,651,276,256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고이월 113,572,62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5,065,7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12,637,936원임.

3)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 예산현액 788,000,000원에 대하여

- 수납액은 1,566,555,697원이며,
- 지출액은 0원임

○ 그 차인잔액은 1,566,555,697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함.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1) 공유재산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 용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증가	감소		
합계		1,095,916,821,000	810,806,728,117	221,488,513,280	1,685,235,035,837	
행정재산	소계	1,058,663,862,000	646,411,113,217	221,488,513,280	1,483,586,461,937	
	공공용재산	732,739,569,400	646,411,113,217	0	1,379,150,682,617	
	공용재산	325,924,292,600	0	221,488,513,280	104,435,779,320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1,252,346,000	171,075,000	0	1,423,421,000	
잡종재산		36,000,613,000	164,224,539,900	0	200,225,152,900	

(2) 물품 결산

물품관리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말 물품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343	2,257,030,000	117	501,169,000	19	262,909,140	441	2,623,608,000

5.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세입 · 세출외 현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및 세입 · 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 · 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가액	지출액	
합 계	3,286,772,386	10,814,095,002	11,652,566,749	2,448,300,639
보증금	374,888,437	49,771,341	348,170,203	76,489,575
보관금	2,457,396,526	1,054,422,940	1,911,008,056	1,600,811,410
잡종금등 기타	454,487,423	9,709,900,721	9,393,388,490	770,999,654

6. 기금 결산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외 13종에 대한 결산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 · 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가액	지출액	
합 계	53,814,609,909	41,375,755,460	22,523,002,100	72,667,363,269
통합관리기금	0	22,694,758,533	0	22,694,758,533
구청사건립기금	27,558,750,360	11,391,856,232	18,534,070,000	20,416,536,59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47,853,516	425,099,880	545,560,000	827,393,396
기초생활보장기금	665,380,371	244,179,372	0	909,559,743
노인복지기금	526,483,411	21,821,014	25,420,000	522,884,425
여성발전기금	508,876,438	313,549,858	13,200,000	809,226,296
중소기업육성기금	572,168,484	2,099,025,670	1,255,770,000	1,415,424,154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27,252,720	230,181,040	89,140,000	268,293,760

구 분 /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액	지 출 액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1,203,914,533	189,518,985	92,463,750	1,300,969,76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19,257,447	7,185,860	0	226,443,307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	19,204,630,396	1,208,195,780	490,000	20,412,336,176
도로굴착복구기금	472,160,136	2,114,587,929	1,750,904,700	835,843,365
재난관리기금	463,838,649	293,473,660	147,076,400	610,235,909
식품진흥기금	1,344,043,448	142,321,647	68,907,250	1,417,457,845

7. 채권 및 채무의 결산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채 권

(단위 : 원)

구 분 /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액	지 출 액	
합 계	17,962,212,820	51,464,659,798	30,288,315,898	39,138,556,720
일반회계	8,021,298,260	47,187,419,850	25,259,443,080	29,949,275,030
특별회계	121,835,740	33,006,370	0	154,842,110
기 금	9,819,078,820	4,244,233,578	5,028,872,818	9,034,439,580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